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5,463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

1997년 8월 9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통상산업부장관 임 창 열

❖ 제정이유

전기사업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 5212호)으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정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비한 사후처리 총당금의 범위 및 산출기준을 정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미리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장관과 입지의 적정성 등 환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연도별 전력설비 건설계획중에서 2년이내의 공기조정
2. 단위 전력설비 용량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
3. 연도별 총설비 용량의 5퍼센트이내의 신규건설 및 폐지

제4조제2항본문중 “상공자원부차관”을 “통상산업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 및 환경부”를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로 “당해 기관장”을 “당해 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대표 각 1인
3. 전기사용자 대표 2인

제1장에 제5조의 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력기술개발계획) ①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개발계획



(이하 “전력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은 5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매년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전력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력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목표
2.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
3.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의 수급·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계획
6.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5조의3(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①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신고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기공급능력등의 구체적 기준)

①법 제6조제1호에서 “공급능력”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추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호에서 “재무능력”이라 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등 사업신청자의 자본조달 및 운영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3호에서 “기술능력”이라 함은 사업신청자의 발전설비 관련사업의 수행 실적 및 기술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충당금(이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분
3. 사용후행연료의 처분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환경관련 협의대상 전기설비등)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발전설비로서 그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물밀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40조의3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밀선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법·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 행위
2. 연·근해 준설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 행위
4. 어초 설치 행위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소·출장소의 명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 점검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

고 일반전기사업자와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재난예방점검대상
2. 재난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예방점검에 소요되는 예산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23조의2(허용기준) 법 제54조의3제1항 및 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 및 수량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3조의3(지정기준) 법 제5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그 사업의 수행이 법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부합할 것
2.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무 능력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사업의 수행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3조의4(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운영자”라 한다)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원전운영자외의 자가 발생시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
3. 원전운영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운반 및 중간저장
4. 원자력발전소의 폐지·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



장·처리 및 처분

- 5.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확보·건설 및 운영
- 6.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23조의5(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외의 자가 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는 제1항의 인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인도 보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등에 관한 사항
- 2.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의7(관리비용)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승인액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8(관리비용 등의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제23조의5제2항 또는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 또는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9(기타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10(방사성폐기물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11(준용규정) ①제9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전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 "전력수급"은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본다.

②제23조의5 및 제23조의7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은 법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일부를 지정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을 위하여 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업무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출력 1만킬로와트미만인 발전설비와 전압 20만볼트미만인 송·변전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제2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상산업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제2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의 수리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 본문,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3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제26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제4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2항제4호(중전의 제3호) 및 제3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 본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전의 제3항)과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1호 및 제9호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하고, 동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제1호 및 제2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비용에 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

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제19조관련)

구 분	대 행 사 업 체		개 인	
	특별시 및 광역시			
1. 자본금	2천5백만원	1천2백만원	-	
2. 기술인력	○ 전기기사(명)	7	5	1
	- 1급	2	2	-
	- 2급	5	3	-
	○ 보조원(명)	3	2	-
3. 사무실면적(m ²)	40	25	10	
4. 장비(종)	10	10	7	
○ 개인장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 Ω)	7	5	1	
- 접지저항측정기	7	5	1	
- 홀크론메타	7	5	1	
- 저압검전기	7	5	1	
- 고압 및 특고압검전기	7	5	1	
○ 공용장비				
-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 Ω)	1	1	1	
- 계전기시험기	1	1	1	
- 절연유내압시험기	1	1	-	
- 절연유산가측정기	1	1	-	
- 특고압COS조작봉	1	1	-	
5. 등록 및 신고	당해 시·도 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자		당해 시·도 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자	

- 비고) 1. 전기기사중 1급은 해당 경력 2년이상, 2급은 해당 경력 4년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전기기사 2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2. 보조원은 용량 500kW이상의 안전관리대행소요 전기기사 3명당 1명씩을 추가 확보하되, 전기분야 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출장소등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확보하여야 한다.